

지리산권문화연구단 통합운영규정

제정 2008. 2. 13. 개정 2008. 9. 16.
개정 2010. 10. 27. 개정 2012. 8. 29.
개정 2014. 2. 11. 개정 2014. 7.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진흥사업(이하 “HK사업”이라한다)에 따라 순천대학교 지리산권 문화연구원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

제2조(정의) HK사업이라 함은 인문학 연구자에게 안정된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이 규정은 HK사업 주관대학인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참여대학인 경상대학교 경남 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직한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HK사업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기구) HK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10. 10. 27)

1. 운영위원회
2. 연구사업팀
 - 가. 이상사회연구팀
 - 나. 지식인상연구팀
 - 다. 생태와 지리연구팀
 - 라. 문화콘텐츠개발팀
3. 기획조정위원회
4. 행정실

제5조(임원 등) 연구단에는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및 각 연구사업팀장을 둔다. (개정 2010. 10. 27)

제6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단장은 주관대학인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장이 맡는다.

② 부단장은 참여대학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장이 맡는다.

③ 연구사업팀장은 해당 연구사업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책임자를 단장과 부단장이 협의하여 임명 하되, 단장 또는 부단장이 겸할 수 있다.

④ 단장, 부단장과 각 연구사업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순천대학교와 경상대학교(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 연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단장·부단장의 역할과 임기를 승계한다. (개정 2010. 10. 27)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단장, 부단장과 각 연구사업팀장 및 단장, 부단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7)

②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27)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0. 27)

1. 연구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구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0. 10.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양 대학교 소속 위원이 최소 2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제10조 (삭제 2014. 02. 11)

제11조 (삭제 2014. 02. 11)

제12조(행정실 및 행정직원) 행정실은 주관대학인 순천대학교에 두며, 행정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HK사업과 관련된 행정 업무
2. HK사업과 관련된 회계 업무
3. 기타 필요한 업무

제13조(연구사업팀의 소속) ① 연구단 각 연구사업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양 대학교 연구원에서 이를 담당하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 합동회의(정보통신망 활용 회의 포함)를 갖는다. (개정 2010. 10. 27)

1. 이상사회연구팀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 지식인상연구팀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생태와 지리연구팀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문화콘텐츠개발팀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② 문화강좌 사업은 이상사회연구팀, 지식인상연구팀에 분속해 운영한다.

제14조(연구사업팀의 구성 및 임명) ① 각 연구사업팀에는 일반연구원, HK교수·HK연구교수(이하 “연구교원”이라 한다), 연구보조원 등을 사업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0. 27)

② 일반연구원은 현직 교원 중에서 단장 또는 부단장의 추천으로 각 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0. 27)

③ 연구교원은 소속 대학 HK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임명하되,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각 50퍼센트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교원의 정년보장 직위전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교의 HK연구교원 임용규정 및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 10. 27)

④ 연구보조원은 각 연구사업팀장의 추천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이 임명한다.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배분

제15조(연구비 관리) 연구단의 연구비는 주관대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각각 57퍼센트와 43퍼센트 비율로 배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0. 27)

제16조(간접비 배분) 연구단과 관련한 간접경비는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각각 60퍼센트와 40퍼센트의 비율로 배분한다. (개정 2010. 10. 27)

제4장 연구교원 임용, 승진 자격기준 및 정년보장 직위 전환 심사

제17조(연구교원 신규채용) 연구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연구교원 직급별 임용, 재임용, 승진 자격 기준) HK연구교원의 직급별 임용, 재임용, 승진 자격 기준에서 연구논문 및 저서의 실적물 인정율(점수)은 각 연구교원의 소속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 하되, 순천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별표1의 업적점수는 연구단 통합운영규정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의 각 퍼센트로 동일하게 환산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1. 연구교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소속대학교 HK연구교원 임용규정 및 [별표4]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가. HK연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나. HK교수 :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한국연구재단 HK연구인력의 연구업적 요건을 충족한 자(개정 2014.7.24.)

2. HK교수의 직급별 승진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7)

가. (삭제 2012.8.29)

나. HK부교수 : HK조교수로서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소속 대학교 HK연구교원 임용규정 및 [별표 3]의 조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4. 02. 11)

다. HK정교수 : HK부교수로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소속 대학교 HK연구교원 임용규정 및 [별표 3]의 조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4. 02. 11)

3. 연구교원 재임용 자격 기준은 소속대학교 HK연구교원 임용규정 및 [별표 5]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연구교원 임용·재임용·승진심사 및 HK교수의 정년보장 직위 전환 심사를 위해 각 대학교 연구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7)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각 대학교 연구원장과 소속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HK연구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 02. 11)

③ 심사위원회에는 소속대학교 교원을 제외한 외부 심사위원을 50퍼센트 이상 참여 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0. 27)

제20조(HK교수의 정년보장 심사) ① 각 대학교 연구원에서는 소속대학교 전임교원 정년보장 임용 전환 절차에 따라 HK교수의 정년보장 심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② 정년보장 HK교수의 정원은 각 대학교에 배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당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③ (삭제 2014. 02. 11.)

④ (삭제 2014. 02. 11.)

⑤ HK교수는 사업종료 이전에 50퍼센트 이상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로 임용하고, 사업 종료 이후 동일한 절차에 의거해 나머지 인원의 정년보장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설 2014. 7. 24)

제5장 기 타

제21조(세부사항) 연구단의 HK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대학교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0. 27)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수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HK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K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HK조교수로 보며, 임용기간, 재계약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한다.

1. HK조교수 임용기간은 종전의 HK전임강사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재계약 심사기준의 업적평가점수 및 연구실적물은 종전의 HK전임강사 임용기간 내의 실적을 포함한다.
 3.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업적평가점수 및 연구실적물은 2012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실적으로 한다.
- ②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K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HK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2014. 0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HK교수 직급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K조교수는 이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 본다.
- ②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K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라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2014. 0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HK연구교원 연차 평가 항목과 방법 (개정 2010. 10. 27)

| 구 분 | 평 가 항 목 |
|--|---|
| HK연구교수, HK교수 | <p>평가항목은 해당 평가기간에 연구교원이 수행한 업적을 다음 3가지항목으로 구분해 총체적으로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 연구업적은 논문 및 저역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2. 학술성과는 연구성과의 사회기여도 및 각종 국내외 학술교류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3. 연구단 기여도는 연구단 내의 학술행사 참여도 및 운영참여도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p>※ '1, 2'의 조항에는 별도의 자율항목을 두어 평가할 수 있으며, HK연구교원의 평가표는 [별표 1]의 2와 같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연구교원 연차 평가 후 우수 연구교원에 대해서는 월 급여의 50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HK연구교원 연차 평가는 사업단계별 1년 단위로 한다. | |

[별표 1]의 2 (개정 2010. 10. 27)

HK연구교원 연차 평가 항목과 방법

| 영역 | 항목 | 평가지표 | 평가점수 (정량) | 평가배점 | 점수 |
|------------------------------------|---------------|--------------------------------|-------------------|---|-----------|
| 연구성과 (아젠다 : 비아젠다 = 2 : 1) | 논문 | A&HCI, SSCI | 12 | 상한선 없음 | |
| | |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 | 10(기준) | | |
| | | 기타 국내 및 국제학회지 | 6 | | |
| | 저역서 | 저서 | 20 | | |
| | | 역서 | 15 | | |
| | | 기타(자료집, DB구축) | 15 | | |
| | 자유험목 | 가산점 10 | | | |
| 학술성과 (아젠다 : 비아젠다= 2 : 1) | 사회적 기여 | 사회교육적 기여도(강좌 등) | 회당 1 | 상한선 없음 | |
| | | 연구결과의 학계 기여도 | 1 | | |
| | 학술 교류 | 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 | 3 | | |
| | | 연구원 학술대회 발표 | 3 | | |
| | | 국내학술대회 발표/토론 | 3/1 | | |
| | | 국제학술대회 발표/토론 | 3/1 | | |
| | 자유험목 | 가산점 10 | | | |
| 연구단 기여도 (정성평가) | 연구단 학술 참여도 | 연구원 학술행사 참여 | 20점 만점 (등급 기재) | 등급별 점수 A 20 (20%) B 15 (40%) C 10 (30%) D 5 (10%) | 점수로 환산 |
| | | 공동연구 분야 협력 | | | |
| | 연구단 운영 참여도 | 연구원 업무 분담 | 20점 만점 (등급 기재) | | 점수로 환산 |
| | | 연구인력과의 융화도 | | | |
| | | 연구소 생산성제고, 특성화 및 사업기획, 발전방안 | 20점 만점 (등급 기재) | | |
| | 계 | | | | 만점 60점 |
| 합 계 | | | | | |

[별표 2] (개정 2010. 10. 27, 2014. 02. 11, 삭제 2014. 7. 24)

[별표 3] 승진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개정 2010. 10. 27, 2012. 8. 29, 2014. 02. 11.)

| 구 분 | 평 가 항 목 |
|------------------|--|
| HK조교수 ⇒ HK부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조교수로서의 경력 4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급에 근무한 기간 내에 연구실적이 <u>최소 600퍼센트(아젠다 관련 연구실적이 300퍼센트 이상)</u> 이상 ▪ [별표 1]의 2에 따라 실시한 최근 4년 간 연차평가 점수 합계가 420점 이상 |
| HK부교수 ⇒ HK정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부교수로서의 경력 5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내에 연구실적이 <u>최소 700퍼센트(아젠다 관련 연구실적이 350퍼센트 이상)</u> 이상 ▪ [별표 1]의 2에 따라 실시한 최근 5년 간 연차평가 점수 합계가 550점 이상 |

[별표 4] 신규임용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개정 2010. 10. 27, 2012. 8. 29, 2014. 02. 11.)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HK연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
| HK조교수 | 평가시점 기준 <u>최근 4년 이내</u> 연구 실적이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소 <u>400퍼센트</u> 이상이되, 아젠다 관련 실적이 <u>200퍼센트</u> 이상 <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의 논문만 인정> |
| HK부교수 | 평가시점 기준 <u>최근 5년 이내</u> 연구 실적이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소 900퍼센트 이상이되, 아젠다 관련 실적이 400퍼센트 이상 <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의 논문만 인정> |
| HK정교수 | 평가시점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구 실적이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소 <u>1,200퍼센트</u> 이상이되, 아젠다 관련 실적이 500퍼센트 이상 <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의 논문만 인정> |

[별표 5] 재임용 평가항목과 기준 (개정 2010. 10. 27)

| 구 분 | 평 가 항 목 |
|--------|---|
| HK연구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이 임기 내 연평균 100퍼센트(아젠다 관련 50퍼센트) 이상 ▪ [별표 1]의 2에 따라 실시한 임기 내 연차평가 점수 합계가 200점 이상(단, 평가시점 기준 임기가 1년 미만인 자는 100점 이상) |
| HK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이 임기 내 연평균 200퍼센트(아젠다 관련 100퍼센트) 이상 ▪ [별표 1]의 2에 따라 실시한 임기 내 연차평가 점수 합계가 200점 이상(단, 평가시점 기준 임기가 1년 미만인 자는 100점 이상) |